

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(안)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1999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
 - 지출건수 : 9개사업
 - 지출결정액 : 2,052,968,000원
 - 지출액 : 2,032,737,400원
 - 이월액 : 14,040,000원
 - 잔액 : 6,190,600원
-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— 없음

3. 예비비 지출내역

- 지출내역 및 참고자료 : 별첨

□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		지 출 결 정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	지 출 사 유
세 항	세세항	사 업 명					
합 계 (9건)			2,052,968,000	2,032,737,400	14,040,000	6,190,600	
본 청 (9건)			2,052,968,000	2,032,737,400	14,040,000	6,190,600	
4211 소방행정	110 인건비	소방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	105,960,000	105,959,620	-	380	'99상반기 명예퇴직 신청한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
3321 재해대책	420 기 타	미보상 사유토지 손실보상	57,259,000	57,259,000	-	-	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 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
1213 공기업 운영	220 자체사업	향토지적 재산 조사 · 발굴	50,000,000	47,500,000	-	2,500,000	지역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의 조사 · 발굴로 권리침해 예방대책 을 강구하고, 지역경제활성화 도모
3321 재해대책	210 보조사업	수해복구 사업	218,173,000	218,173,000	-	-	'98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

(단위 : 원)

구		분		지 결 정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	지 출 사 유	
세 항	세 세 항	사 업 명							
3331	420	도로건설	기 타	도로편입토지 부당이득금 반환	37,991,000	34,303,200	-	3,687,800	도로편입토지의 점유사용 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
3331	420	도로건설	기 타	도로편입토지 부당이득금 반환	13,505,000	13,502,580	-	2,420	도로편입토지의 점유사용 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
3321	210	재해대책	보조사업	수해복구사업	1,526,562,000	1,526,562,000	-	-	'99. 8.2~8.3 및 9.5~9.10, 10.10~10.11 기간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 도비부담금
3332	210	도로관리 사업소 운영	보조사업	"	31,635,000	17,595,000	14,040,000	-	"
3333	210	도로관리 사업소 충주지소 운영	보조사업	"	11,883,000	11,883,000	-	-	"

참 고 자 료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4210 소방관리	100 경상예산	101 인건비	141,200	28,289	112,911	218,871	105,960
4211 소방행정	110 인건비	101-02 수당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'99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소방공무원(3명)에게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.(105.960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15,172,829	-	105,960 /	15,066,869



우(360-270) 청주시 복대동 265-1 / 전화 (0431) 220-5112 / 행 5112 / FAX 5129
 소방행정과 과장 최철영 / 장비담당 정인택 / 담당자 김혜숙

문서번호 소방13810 - 336
 시행일자 1999. 3. 26. (년)
 사유
 수신 기획조정실장
 참조 예산담당관

선		지	
결	예산담당관	시	
접	일자 1999. 3. 26	결	
	시간	재	
수	번호 508	공	
처	리과 예산담당	공	
담	당자	람	

제목 '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요청

'99년도 상반기(1/4분기)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코자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제 29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을 불임과 같이 요청합니다.

불 임 :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. 끝.

소방본부장
소 방 본 부 장

예비비지출요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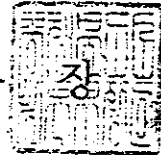
(단위:천원)

과목			예산액 (1)	지출액 (2)	예산잔액 (1-2)	금후소요액 (3)	예비비 지출요구액 (3-1-2)	비고
세항	세세항	목						
4211 소방 행정	100 경상 예산 110 인건비	101 인건비 101-02 수당	141,200	28,289	112,911	218,871	105,960	

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한 사유 :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

1999년 3월 일

소 방 본 부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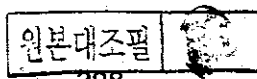


기획조정실장 귀하

문서번호 1211-	★ 소 방 담	● 소 방 담	소방본부장	행정부지사	도지사
보존기간 1년	장우홍 화정영 양희중 한기수				
보고일자 '99.2.24					
협 조	예산담당관: 노라	기획조정실장: 김	예산담당: 노	인사담당: 한	

'99.상반기(1/4)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검토보고

忠 清 北 道
消 防 本 部



'99상반기(1/4) 명예퇴직수당지급에 따른 검토보고

'99상반기(1/4)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관련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.

1.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

순번	소속	직급	성명 (한자)	정년 잔여기간	지급금액	산출근거
지급합계					105,959,620	
1	청주소방서	지방소방장	조영준	08년09월	42,586,500	- 516,200 × 82.5 = 42,586,500
2	청주소방서	지방소방장	김봉기	08년09월	40,420,870	- 489,950 × 82.5 = 40,420,870
3	청주소방서	지방소방장	고창욱	03년09월	22,952,250	- 510,050 × 45 = 22,952,250

※ 산출기준(근거: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)

- 정년잔여기간 5년이내인자 :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
-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인자

$$- \text{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} \times \left[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 \right]$$

2. 문제점

- 총무과(인사담당) 예산에 일괄계상된 명예퇴직수당(3억원)에서 지급하여야 하나, 지급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.

3. 대책(건의)

- 명예퇴직수당 소요액 105,959,620원을 두 예비비에서 지원 요망

'99상반기(1차)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결정

순 번	소 속	직 급 (직위)	성 명 (한자)	생 년 월 일	최 초 임 용 일	근 속 기 간 (연금법상)	정 년 예 정	잔 여 기 간
1	청주소방서	지방소방장	조영준 (趙泳俊)	'49.08.01	'77.03.01	31년7월	2007.12.30	8년9월
2	"	"	김봉기 (金鳳基)	'49.12.10	'77.03.01	25년7월	2007.12.30	8년9월
3	"	"	고창옥 (高昌玉)	'44.12.27	'77.03.01	28년8월	2002.12.30	3년9월

일본대조필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회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3320 치수및재해 대책	100 경상예산	305 배상금등	-	-	-	57,259	57,259
3321 재해대책	120 경상적경비	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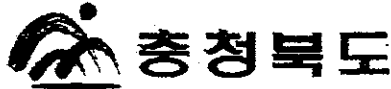
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.(57,259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등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7,894,212	105,960	57,259	7,730,993



우 360-765 충북 청주시 문화동 89 / ☎ 220~3655 / 행정 3655 / FAX 220~3646
 재해대책과 과장 김진목 / 재해관리담당 신두철 / 담당자 신승우

문서번호 재대 58170~ 537

시행일자 1999. 5. 24 .

(경 유)

수 신 기획조정실장

참 조 예산담당관

선 결 계 산 담 당 관	지 시
접 일 자	결 재
사 각 999	공 람
수 번 호	
처 리 과	
담 당 자	

Handwritten notes in table:
 - Top right: 2차
 - Middle right: 5. 25
 - Bottom middle: 예산담당

제 목 예비비 지출 요구

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비비 지출요구액 : 57,258,160원
 - 손실보상금 : 57,258,160원
2. 지출과목
 - (3000)경제개발비 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 (3320)치수및재해대책 (3321)재해대책 (100)경상예산 (120)경상적경비 (305)배상금등

3. 지출사유

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인 청주시 방서동 241의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치 않고, 서울 강북구 수유동 281-13번지 한현구가 청주지방법원에 토지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소, '99.4.21 우리도가 패소하여 부분항소키로 결정된 바 한현구 지분 손실보상금 163,636,640원중 기결정 수령토록통보된

문서번호 재대 58170

시행일자 1999. . 5.

57,258,160원을 우선 급회에 지급코자 하오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를
용코자 합니다.

붙임 :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. 끝.

건 설 교 통 국 장

전결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

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	지출액	예산잔액	금후소요	예비비지	비고
세항	세세항	목	(1)	(2)	(1-2)	액 (3)	출요구액 (3-1-2)	
3320 치수 및 재해대책	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	305 배상금등 비	0	0	0	57,259	57,259	

○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

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
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(기결정 통보되었던)을 지출하여야하나 예산 미확보

1999년 5월 일

건설교통국장 김 종



기획조정실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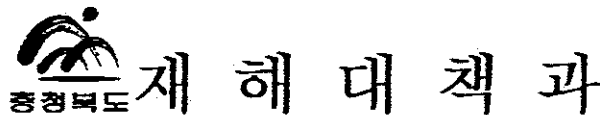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	재대58170
보존기간	년
보고일자	'99. 5.

재해대책과	건설교통국	행정부지사	도지사
김기복	김영우	김영주	김영주
협 조	기획조정실장 김 예산담당관 김 재해관리담당 김		

★
토목6
신승우

무심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

예비비지출



무심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

예 비 비 지 출

서울 강북구 수유동 281-13 한현구가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의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우리도가 패소하여 손실보상금 163,636,640원 지급 하여야 하나 부분항소로 당초 보상결정액 57,258,160원을 지급코져 합니다.

소송현황

- 사건명 :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
- 당사자 : 서울 강북구 수유동 281-13 한현구
- 하천명 : 지방하천 무심천
- 대상토지 현황

소재지				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액		
	지목	면적	소유자	하천편입 추정일자	계	금회지급액
리	지번					항소판결후지급예정액
계	2필지	14,840㎡			163,636,640	57,258,160원
방서	241 하천 351 임야	9,154㎡ 5,686㎡	한현구외6인	'1925년경	163,636,640	57,258,160원
						106,378,480원

※ 손실보상금액은 한현구 지분만 표기 한것임.

- 소송 제기 : '98. 1.17
- 판결선고일 : '99.4.21(우리도 패소)

□ 문제점

○ 손실보상금 예산 미확보

- 직할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금 소유자간의 다툼으로 미수령
- 보상결정액(도비) '97년 반환조치

※ 자출소요액

(단위:원)

트지위치	면적 (㎡)	소재기자	손실보상금 (한현구지분)		
			지급판결액	금회지급액	항소판결후지급예정
계	14,840		163,636,640	57,258,160	106,378,480-
방서동 241 351	9154 5686	한 현 구	163,636,640	57,258,160	106,378,480

부분항소한후 패소시 도비(7,902천원)절감

□ 해결방안

- 기결정통보된 손실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

□ 향후대책

- 사건토지는 지방하천 무심천에 편입된 토지로 기보상결정되었던 한현구지분 57,258,160원을 우선 지급하고
- 항소 선고후 잔액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 종결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 후 소 요 액	부 족 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1210 기획관리	200 사업예산	207-01 학술용역비	-	-	-	50,000	50,000
1213 공기업운영	220 자체사업	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지역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의 체계적인 조사·발굴로 권리침해 예방대책강구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」 위탁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.
(50,000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7,894,212	163,219	50,000	7,680,993



문서번호 예산13380-
 보낸기간
 보고일자 99. 7.

★ 기획부지사
 ● 예산담당관
 ● 조정실장
 ● 정두행
 ● 정
 ● 도지사

귀 노략의대... 하... (Handwritten signature)

합조

총무과장 김철환	자치행정국장 홍
기업지원과장 가흥근	경제활성국장 김
실업대책반장 김태영	농정국장 김
농정과장 박대진	문화진흥국장 김
원예유통과장 김재홍	기획관 김영원
문화예술과장 김	
관광과장 김	
예산담당관 김	

향토지적재산조사발굴 및 관리계획

기 획 조 정 실
 예 산 담 당 관 실

郷土知的財産調査發掘 및 管理計劃

I. 計劃의 背景

- 글로벌라이제이션(Glocalization) = Globalization(세계화) + Localization(지방화)이 본격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
- 지역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 이를 적극 상품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나감으로서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고
- 향토지적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, 지역주민에게 권리화 (특허, 의장, 상표, 저작권등) 하면 무한한 “고부가가치의 자산”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
- 도내의 향토지적재산을 일체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해 나가고자 함

II. 推進概要

-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
하반기 공공근로사업요원을 활용하여 일체조사하되 한국지적재산 관리재단에 위탁 추진
- 조사발굴재산의 권리화
조사결과를 토대로 권리화 추진(자치단체, 개인, 기업등)

Ⅲ. 郷土知的財産 一齊調査

1. 조사목적

- 도내 각지역에 산재하는 향토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대책강구
- 조사발굴된 자료를 인터넷등 정보인프라망에 공급하여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

2. 조사개요

- 기간 : '99. 8 ~ 11월(4개월간)
- 소요사업비 : 132,500천원정도
 - 조사요원 인건비 55만원×33인×4월=72,600천원(공공근로사업)
 - 조사요원 현지조사비 5,000원×60일×33인= 9,900천원(")
 - 지적재산관리재단(인건비, 교육, 소모품, 검색비등) 50,000천원
 - ※ 세부 예산내역 별첨
- 소요재원
 - 조사요원 인건비 및 현지조사비 : '99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(시·군에서 집행)
 - 지적재산 관리재단 용역비 : 도비 부담(50,000천원정도)
 - ※ 재원 : 도일반회계 예비비
- 추진방법 : 지적재산 관리재단에 조사용역 의뢰
- 임금 및 근로조건 :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의함

3. 공공근로요원의 선발

○ 선발인원 : 33명(11개시·군×3명)

※ 중평출장소는 괴산군에서 조사로 제외

○ 선발기준

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미취업자중
PC운영 가능자

○ 신청 및 선발

- '99.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 유자격자를 선발(해당시군
에 유자격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타시군 유자격자 배치가능)
- 「시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을 도
에 제출

4. 조사발굴대상

충청북도 각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향토성이 있는 유·무형의
자산을 발굴·활용하여 문화적·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
지역문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
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발굴함

○ 향토성을 가진 지적재산으로서 향토자원의 이용이 현실화된 것

- 유형의 향토지적재산(식·의생활, 주거생활등 실생활분야)
- 무형의 향토지적재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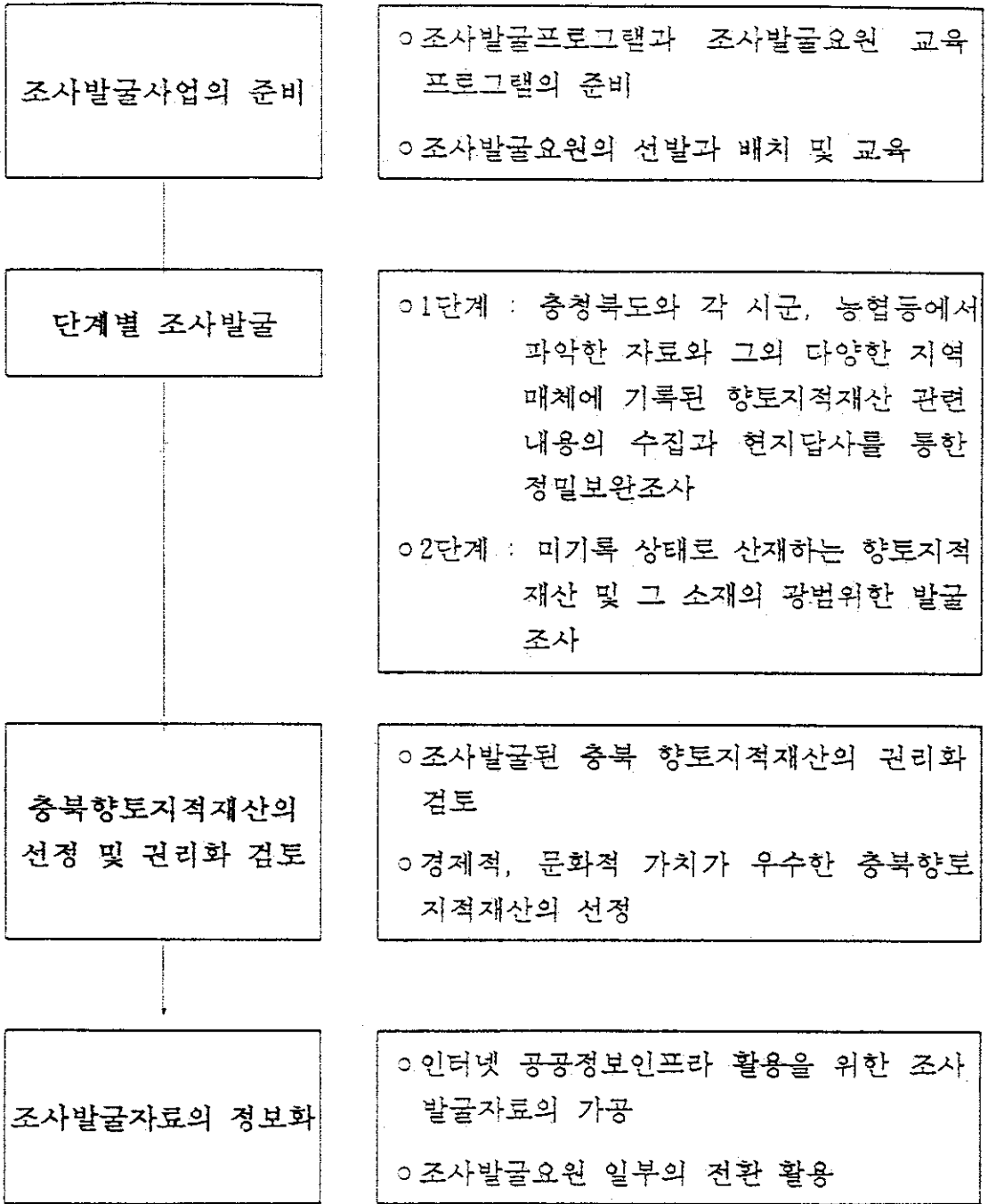
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문화적·예술적 욕구에 의한 개인적, 집단적 지적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문화적 자산의 총체

○ 향토자원으로서 그의 이용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개발여부에 따라 경제적·문화적 가치가 현실화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

5. 사업추진체계

충청북도	시·군	지적재산관리재단
· 기본계획수립	· 조사·발굴요원선발	· 조사요원 교육
· 시군지침시달	· 조사발굴자료 정보제공	· 조사세부계획수립
· 발굴조사요원 교육	· 조사·발굴요원 임금	· 발굴요원 배치
· 발굴자료의 권리화 및 활용방안강구	· 지출(인건비, 교통비, 식대)	· 조사발굴 팀장배치
· 사업추진의 총체적 관리감독	· 발굴자료의 권리화 및 활용방안강구	· 조사시행(전문가)
	· 조사요원 지도·관리	· 권리화 검토
		· 보고서 작성 제출

< 조사발굴사업의 진행 >



IV. 行政事項

- 도의 지적재산 관련 해당 실적에서는 본조사 발굴사업에 분야별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필요시 조사요원 지도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협조
- 조사완료후 권리화가능 지적재산에 대하여는 분야별로(실·과별) 권리화 및 활용방안강구
- 시군에서는 조사발굴요원 선발에서부터 조사 전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자료제공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된 지적재산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 및 권리화 추진
- 한국지적재산 관리재단에서는 추진상황을 매일 말일까지 서면 제출
《지적재산관련 분야별 책임추진부서》

분 야 별	부 서	비 고
○ 조사 및 권리화 총괄	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	공기업담당
○ 기 업 분 야	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	
○ 농 업 분 야	농정국 농정과, 원예유통과	
○ 문화예술분야	문화진흥국 문화예술과	
○ 관 광 분 야	문화진흥국 관광과	
○ 기타조사에서 도출된분야	업무소관 실과	

조사발굴사업 소요예산(4개월분)

□ 공공근로사업비

항 목	세 부 내 용	산 출 근 거	금 액	비 고
공공근로요원 지원비	요원인건비 현지조사비	· 55만원×33인×4월 · 5천원×33인×60일	72,600,000 9,900,000	
계			82,500,000	

□ 일반예산

항 목	세 부 내 용	산 출 근 거	금 액	비 고
준 비 비	관리팀 예비조사	· 단장1인 5만원×2일	100,000	
		· 팀장4인 3만원×2일	240,000	
	교육자료 제작	· 300부×4천원	1,200,000	
조사요원교육	강사료 및 여비	· 30만원×4인	1,200,000	
업무수행경비	사진, 지도, 필기구 등 구입비	· 7종	1,800,000	
권리화가능성 검토	국내, 해외 검색 및 출력비용	· 국내3종, 해외3종	8,000,000	
소모품 등 기타관리비	전화요금	· 6만원×4대×4월	960,000	
	제세공과금	· 50만원×4월	2,000,000	
	사무용품	· 20만원×4월	800,000	
	컴퓨터대여	· 10만원×4대×4월	1,600,000	
보고서작성		· 500부×8천원	4,000,000	
조사·발굴 관리단지급비	관리요원 인건비	· 단장 1인 100만원×4월	4,000,000	
		· 관리요원2인 100만원×4월	8,000,000	
· 팀장 4인 80만원×4월		12,800,000		
	출장여비	· 단장 1인 3만원 ×30일	900,000	
		· 팀장 4인 2만원 ×30일	2,400,000	
계			50,000,000	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3320	200	403-01	5,948,887	5,948,887	-	218,173	218,173
치수및재해 대책	사업예산	자치단체 자본보조					
3321	210						
재해대책	보조사업	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'98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
(218,173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7,894,212	213,219	218,173	7,462,820

「청풍명월21」은 충북환경 실천계획입니다



우 360 - 765 /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/ ☎ 220-3641 / 행3641 / 전승 3649
 처리부서 : 재해대책과(등관4층) /과장 김진득 /재해관리담당사무관 신두철 /담당자 김준수

문서번호 재대 58721 - 744

시행일자 1999. 7. 26.

수 신 예산담당관

참 조

신청 일	신청 일자	지 시	
접 수	접 수 시간	결 재	
수 번호	1999. 7. 26	공 람	
처 리 과	예산담당		
담 당 자			

제 목 예비비 지출요구

'98수해복구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요구 합니다.

1. 사 업 명 : '98수해복구사업(추가지원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218,173천원(도비)
3. 예 산 과 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

붙 임 :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. 끝.

건설교통국장 김충중
건설교통국장

새천년 녹색충북은 「청풍명월21」로 !

예비비 지출요구서

(단위: 천원)

과 목			예산 현액	기지출액	예산 잔액	금 후 소요액	차액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 항	세세항	목					
3321	200	403	4,075,000	4,075,000	-	218,173	218,173
재해대책	사업예산	자치단체 자본이전					
	210	403-1					
	보조사업	자치단체 자본보조					

- 예비비 집행사유 : '98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 결과 사업비 추가지원

1999년 7월 일

건설교통국



기획조정실장

「청정명월21」은 충북환경 실천계획입니다



충청북도

우 360 - 765 /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/ ☎ 220-3641 / 팩3641 / 전승 3649
 처리부서 : 재해대책과(동관4층) / 과장 김진록 / 재해관리담당사무관 신두철 / 담당자 김준수

문서번호 재대 58721 -

시행일자 1999. 7.

경 유

수 신 내부결재

참 조

취 급		도 지 사
보 존		ㄷ ㄴ
행정부지사	김준수	정무부지사
건설교통국장	김진록	기획조정실장 김 예산담당관 신두철
재해대책과장	김진록	재해관리담당 김준수 재해방재담당 김
기 안	*행정7급 김	시설복구담당 김진록

제 목 예비비 지출

'98수해복구사업의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(도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하여 조속히 복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1. 사 업 명 : '98수해복구사업(추가지원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218,173천원(도비)
3. 예 산 과 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 . 끝.

충청북도지사

새천년 녹색충북은 「청정명월21」로 !!

[제 2 안]

수 신 : 예산담당관

제 목 : 예비비 지출요구

'98수해복구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요구 합니다.

1. 사 업 명 : '98수해복구사업(추가지원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218,173천원(도비)
3. 예 산 과 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

붙 임 :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. 끝.

건 설 교 통 국 장

새천년 녹색충북은 「청풍명월21」로 !

'98피해복구계획변경(추가소요액)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사업량	재원별				
		계	국비	국고전환금	도비	시군비
계	19개소	2,181,730	642,515	1,231,372	218,173	89,670
건설교통부 (준용하천)	8개소	1,285,030	642,515	514,012	128,503	-
보은	2	1,140,000	570,000	456,000	114,000	-
괴산	6	145,030	72,515	58,012	14,503	-
행정자치부 (소하천)	11개소	896,700	-	717,360	89,670	89,670
보은	5	742,000	-	593,600	74,200	74,200
괴산	6	154,700	-	123,760	15,470	15,470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3330 건설관리	420 기타	305 배상금등 (배상금)		-	-	37,991	37,991
3331 도트건설		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도르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(배상금)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(37,991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7,894,212	431,392	37,991	7,424,829



우360-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/ 전화(0431)220-3621/ 전송220-3629
 처리부서 : 도로과(동관4층) 과장 송영화 /도로관리담당 고규현 /담당자 김대희

문서번호 도로 58710-746

시행일자 1999. 8. 3

(경유)

수신 기획조정실장

참조 예산담당관

선결	예산담당관		지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1000 00		
수	번호	1100	재·공	람
	처리과	예산담당관		
담당자				

제목 예비비지출요구

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요구액 : 37,991천원
2. 지출사유 : 도로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배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.
3. 지출과목 : 경제개발비, 국토자원보존개발, 건설관리, 도로건설, 경상예산, 경상적경비, 배상금등

첨부 :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.

충청북도
 건설교통국
 국장

예비비지출요구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 (1)	지출액 (2)	예산 잔액 (1-2)	금 후 소요액 (3)	예비비 지출 요구액 (3-1-2)	비고
세 항	세세항	목						
3331 도로건설	100 경상예산	305 배상금등	0	0	0	37,991	37,991	
	120 경상적 경 비							

○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

도로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
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
배상금 예산 미확보

1999년 8월 일

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



기획조정실장 귀하

문서 번호	도로 58710-
보 근 기 간	3
보 달 일 차	99. 8.

*담당부서
예산담당관
의
의
의

●도로과장	건설교통국	부 지 사		도 지 사
		정 무	행 정	
회 가 15800원 정액의 한시수출				
협조	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			

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예 비 비 지 출

○ 총 소 요 액	: 37,991천원
- 부 당 이 득 금	: 30,366
- 이 자	: 3,125
- 소 송 비 용	: 4,500



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지출

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이 판결확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합니다.

□ 소송결과

- 사건명 :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
- 원 고 : 이만식(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21-2)
- 대상토지
 - 노선명 : 지방도 597호선(장연~평창)
 - 편입토지 내역

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	소유자	편입 추정일
계	6필지		2,713㎡		
충주시 상모면 온천리	산64-1	도로	1,316	이만식	1990. 12
	663-2	"	1,218		
	663-3	임	14		
	663-6	도로	44		
	663-7	"	118		
	663-8	"	3		

- 판결내용 : 일부승소(부당이득금지금액 감소)
 - 1심 : 32,221천원, 월492천원 ⇒ 2심 : 21,015천원, 월334천원
- 판결확정일 : '99. 7. 24

□ 부당이득금 지급 ⇒ 예비비에서 지출

○ 소요액

합계	부당이득금		이 자		소송비용
	'92.5.7~ '97.5.6	'97.5.7~ '99.8.31	'97.5.13~ '99.7.1	'99.7.2~ '99.8.31	
37,991천원	21,015	9,351	2,246	879	4,500

※ 이자산출내역

-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('97. 5. 13~'99. 7. 1, 780일간)이자⇒연리5%
-21,015천원 × 5% × 780/365 = 2,246천원
- 판결선고일로부터 지급완료일까지('99. 7. 2~'99. 8. 31, 61일간)⇒연리25%
-21,015천원 × 25% × 61/365 = 879천원

□ 향후조치계획

-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(약 230,000천원)은 추경예산에 체불용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지급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3330 건설관리	420 기타	305 배상금등 (배상금)	37,991	37,991	-	13,505	13,505
3331 도로건설							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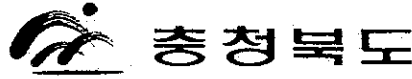
도로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(배상금)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(13,505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	기 지 출 액	금 회 소 요 액	잔 액
3,221,561	469,383	13,505	2,738,673



우360-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/ 전화(0431)220-3621/ 전승220-3629
 처리부서 : 교통도로과(동관4층) 과장 송영화 / 사무관 여순구 / 담당자 김대희

문서번호 교통 58710- 467

시행일자 1999. 10. 27.

(경유)

수신 기획조정실장

참조 예산담당관

선	별	상당관	66	지	
접	일	시간	1000 10. 27	결	
수	번	번호	286	재	
처	리	과	교통도로과	공	
담	당	자	송영화	람	
심	사	자		심	사 일

제목 예비비지출요구

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요구액 : 13,505천원
2. 지출사유 : 도로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, 배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.
3. 지출과목 : 경제개발비, 국토자원보존개발, 건설관리, 도로건설, 경상예산, 경상적경비, 배상금 등

첨부 :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끝.

건설교통국장

예비비지출요구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 (1)	지출액 (2)	예산 잔액 (1-2)	금 후 소 요액 (3)	예비비 지출 요구액 (3-1-2)	비고
세 항	세세항	목						
3331 도로건설	100 경상예산	305 배상금등	37,991	37,991	0	13,505	13,505	
	120 경상적 경비							

○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

도로편입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
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
배상금 예산 미확보


1999년 10월 일

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




기획조정실장 귀하

문서번호	교통, 58710-
보존기간	3
결재일자	'99. 10.
공개여부	비공개

*교통도로 예산 순 구 호	● 교통도로과장 건설교통국	부지사		도지사 
		정무	행정	
	하 가 하 하	가 하 하	하 하 하	
협조	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			

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지출결의

○ 총 소요액	: 13,505천원
- 부당이득금	: 10,998 "
- 이 자	: 2,507 "


교통도로과
 충청북도

1999. 10. 27
 성명 김대태

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지출

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이 판결확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합니다.

□ 소송개요

- 사건명 :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
- 원 고 : 김병구(충주시 교현동 남산아파트 203-404호)
- 피 고 : 충청북도
- 소송제기일 : '96. 10. 29
- 1심판결일 : '98. 12. 10
- 2심판결일 : '99. 9. 30
- 대상토지

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	편입 추정일	비고
계	6필지		1,275㎡		
충주시상모면은천리	176-3	채방	208	1962. 1	지방도597호선
	176-4	"	202		
	210-3	"	198		
	759-4	도로	512		
	772-3	"	133		
	773-3	"	22		

- 판결내용 : 부당이득금 10,998천원 및 이자 지급

□ 부당이득금 지급 ⇒ 예비비에서 지출

○ 소요액

합 계	부당이득금	이 자		비고
		'98.11.3~ '98.12.10	'98.12.11~ '99.10.31	
13,505	10,998	58	2,449	

※ 이자산출내역

-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('98. 11. 3~'98. 12. 10, 38일간)이자⇒연리5%
-10,998천 원 × 5% × 38/365=58천 원
- 판결선고일로부터 지급완료일까지('98.12.11~'99.10.31, 325일간)⇒연리25%
-10,998천 원 × 25% × 325/365=2,449천 원

□ 향후조치계획

-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추경예산에 체불용지 보상비를 편성하여 지급

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조서

(본청분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후 소요액	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항	세세항	목					
3320 치수및재해 대책	200-210 보조사업	401-01 시설비	5,805,301	5,805,301	-	17,748	17,748
3321 재해대책		403-01 자치단체 자본보조	22,685,625	22,685,625		1,508,814	1,508,814
3330 건설관리	200-210 보조사업	401-01 시설비	3,064,644	3,064,644	-	31,635	31,635
3332 도로관리 사업소운영							
3330 건설관리	200-210 보조사업	401-01 시설비	2,414,042	2,414,042	-	11,883	11,883
3333 도로관리사 업소총주지 소운영							
계			34,987,360	34,987,360		1,570,080	1,570,080

○ 예비비 집행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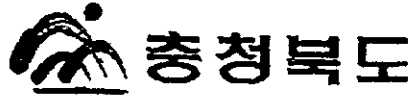
'99. 8. 2~8.3 및 9. 5~9.10. 10.10~10.11(주택전과) 기간중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함(1,570,080천원)

※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등법시행령 제32조

○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지출액	금회소요액	잔액
3,221,561	482,388	1,570,080	1,168,593



일반

보고심사

우31610-7161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/ 전화 (0431)220-3821 / 행 3821 / 전송 220-3649
 처리부서 안전관리과(동관 4층) 과장 김진욱 / 안전관리담당사무관 정인화/ 담당자 전광식

문서번호 안전 58721 - 334
 시행일자 1999. 11. 6 (년)

선 람	장관	지 시
접 수	일자 시간 번호	결 재 · 공 람
처 리 과	예산담당	
담 당 자		
심 사 자		심사일

(경유)
 수 신 예산담당관
 참 조 예산담당

제목 예비비 지출요구

지난 8.2~8.3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도로·하천·교량 등 시설의 복구비 예산이 증액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도비 부담금을 요구 하니 예비비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'99 수해복구사업(변경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1,563,600천원
3. 예산과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

붙 임 : 예비비지출 요구서 1부. 끝.

건설교통국장


예비비 지출요구서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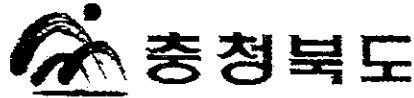
과 목			예산현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 후 소요액	차액부족액 (예비비집행)
세 항	세세항	목					
3321	200						
재해대책	사업예산						
	210	403	22,467,452	22,467,452	-	1,563,600	1,563,600
	보조사업	자치단체 자본이전					
		403-01 자치단체 자본보조					

- 예비비 집행사유 : '99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
실의 결과 사업비 추가지원

1999년 11월 일

건설교통국장 

기획조정실장



일반문서

보고심사

우 350-71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번지 / 전화 (0431)220-3821 / 행 3821 / 전송 220-3649
 처리부서 안전관리과(등관 4층) 과장 김진득 / 안전관리담당사무관 정인화 / 담당자 전광식

문서번호 안전 58721-334
 시행일자 1999. 11. 6 (년)

(경유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보존기간	년	도	시
공개여부	공개		
행정부지사	주무관		
건설교통국장	기획조정실장		
안전관리과장	예산담당관		
기안자	★행7전광식	안전관리담당	방재계획담당
심사자		하천시설담당	합조
		심사일	

제목 예비비 지출

지난 8.2~8.3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도로·하천·교량 등 시설의 복구비 예산이 증액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.

1. 사업명 : '99수해복구사업(변경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1,563,600원(도비)
3. 예산과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 끝.

충청북도지사

우 3161047161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번지 / 전화 (0431)220-3166 / 행 3166 / 전승 220-3186
처리부서 안전관리과(등관 4층) 과장 김진록 / 안전관리담당사무관 정인화 / 담당자 전광식

문서번호 안전 58721 -

'99. 11.

수 신 : 예산담당관

참 조 :

제 목 : 예비비 지출 요구

지난 8.2~8.3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도로·하천·교량 등 시설의 복구비 예산이 증액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도비 부담금을 요구 하니 예비비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'99 수해복구사업(변경분)
2. 예비비지출액 : ₩1,563,600천원
3. 예산과목 : 국토자원보존개발비, 치수및재해대책, 재해대책, 사업예산(보조사업), 자치단체자본이전(자치단체자본보조)

붙 임 : 예비비지출 요구서 1부. 끝.

국 장 교 설 건

99 수해복구비 추가소요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량	재 원 별				
		계	국비	국고전환	도비	시군비
계		4,033,871	1,173,011	502,721	1,563,600	794,539
건설교통부		2,000,000	1,000,000	502,721	739,264	-241,985
·농어촌도로	62	0	0	176,315	-84,175	-92,140
충주		0		39,829	-15,932	-23,897
괴산		0		136,486	-68,243	-68,243
·소하천	1	0	0	387,672	-237,827	-149,845
괴산		0		387,672	-237,827	-149,845
·하천	63	2,000,000	1,000,000	0	1,000,000	0
영동		2,000,000	1,000,000		1,000,000	
·지방도	18	0	0	-61,266	61,266	0
단양		0		-61,266	61,266	
문화관광부		-9,150	72,035	0	-40,592	-40,593
·국민관광시설	1	0	61,664	0	-30,832	-30,832
단양		0	61,664		-30,832	-30,832
·체육시설	1	0	14,946	0	-7,473	-7,473
단양		0	14,946		-7,473	-7,473
·청풍문화재	1	-9,150	-4,575	0	-2,287	-2,288
제천		-9,150	-4,575		-2,287	-2,288
농림부		78,840	39,130	0	15,884	23,826
·수리시설	62	80,000	40,000	0	16,000	24,000
음성		80,000	40,000		16,000	24,000
·방조망시설	1	-1,160	-870	0	-116	-174
음성		-1,160	-870		-116	-174
행정자치부		1,964,181	61,846	0	849,044	1,053,291
·소규모시설	125	1,779,268	0	0	793,633	985,635
청원		960,000			384,000	576,000
괴산		819,268			409,633	409,635
기타시설	4	184,913	61,846	0	55,411	67,656
강우량시설(충주)	1	61,220			24,488	36,732
청풍문화재(제천)	1	9,150	4,575		2,287	2,288
안내시설(괴산)	1	20,000	10,000		5,000	5,000
경도국우량국(괴산)	1	94,543	47,271		23,636	23,636



충청북도

일 관

우 360-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39 / 전화 220-3781 행 3781 /전송 220-3469 등관 4층
처리부서 : 건축문화과 과장 김재홍 / 건축행정담당사무관 연창홍 / 담당자 변상천

문서번호 건축58550 - 20 2

시행일자 1999. 11. 8

공개여부 (공 개)

수 신 기획조정실장

참 조 예산담당관

선결	예산담당관	연세 2011 9	지시
접	일자		결
	시간		재
수	번호	160	
처	리 과	예산담당	공
담	당 자	연	람
심	사 자		심 사 일

제 목 예비비지출 요구

○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비지출을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요구액 : 6,480천원
2. 지출사유 : '99. 9. 5~9. 10 및 10. 10~10. 11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.
3. 지출과목 : 재해대책,사업예산,국고보조사업,자치단체 자본이전

- 붙 임 : 1.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
2. 예비비지출결의(사본)1부 끝

문화진흥국장 박재혁
문화진흥국장

예비비지출요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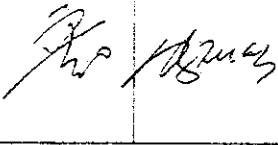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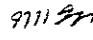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 (1)	지출액 (2)	예산 잔액 (1-2)	금 후 소요액 (3)	예비비 지출 요구액 (3-1-2)	비고
세 항	세세항	목						
3321	200	403	-	-		6,480	6,480	
재해대책	사업예산	자치단체 자본이전						
	210	국고보 조사업						
<p>○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</p> <p>'99. 9. 5 ~ 9.10기간중 4동, 10. 10 ~ 10.11기간중 2동 등 6동의 주택이 집중호우로 파손 되었으나 도비 보조금 예산 미확보</p>								
<p>1999년 11월 일</p>								
<p>문화진흥국장 박재식 </p>								
<p>기획조정실장 귀하</p>								

문서번호	건축 58550-
부기기간	3
결재일자	'99. 11.
공개유형	비공개

권승권

*건축행정
과장
권승권

건축문화과장	문화진흥장	부지사	드지사
		유지재	
협조	기획조정실장  예산담당관 		

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지출결의

○ 총 소요액	: 6,480천원
- 대상 주택	: 6동
- 복구비	: 6,480천원

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
99년 11월 20일
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권승권 (인)



건축문화과

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따른

예 비 비 지 출

'99. 9. 5~9.10 및 10.10~10.11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6동의 주택이 파손 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미확보되어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합니다.

피해내역

(금액단위 : 천원)

구 분	피해자	복구 계획	재 원 별				
			계	국 비	지 방 비		
					소 계	도 비	시.군비
계	6		48,600	32,400	16,200	6,480	9,720
9.5- 9.10	소계	4	32,400	21,600	10,800	4,590	6,210
	청주시 신종구	개축	8,100	5,400	2,700	810	1,890
	청원군 임학빈	"	8,100	5,400	2,700	1,080	1,620
	괴산군 김홍채	"	8,100	5,400	2,700	1,350	1,350
		김덕수	"	8,100	5,400	2,700	1,350
10.10- 10.11	소계	2	16,200	10,800	5,400	1,890	3,510
	청주시 이상복	개축	8,100	5,400	2,700	810	1,890
	청원군 조병권	"	8,100	5,400	2,700	1,080	1,620

※ 피해구분 : 반파6동(전과기준 복구 → 개 축)

조치계획

- 동절기이전 복구토록 행정지도 및 자금지원